

# 축산분야에서 적용되는 제조물책임법(PL법)

## 1.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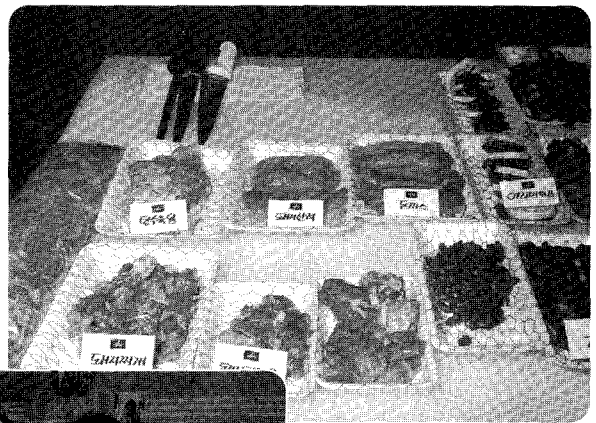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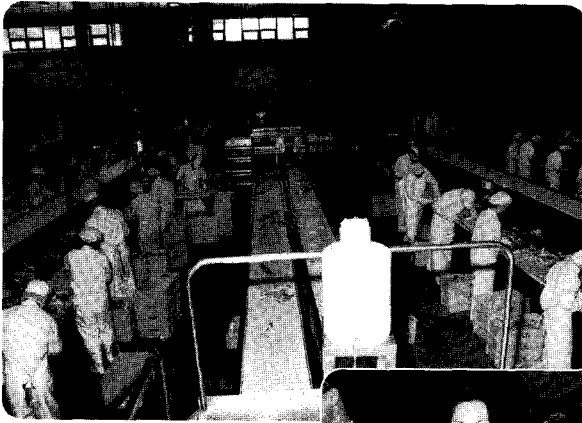
## 2. 제조물책임법의 목적과 입법배경에 대하여

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어,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 발생시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 등 어려움으로부터 소비자의 입증부담 경감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63), EU('85), 중국('93), 일본('95) 등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수출제품이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이 국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난의 우려가 있어 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법은 2000년 1월 제정, 공포되어 2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 시행되며 8개 조항 2개 부칙으로 이루어진 민법의 특별법이다.

장 현 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 3.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제조업자가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제조물의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업자의 개발위험의 항변이나 구속적인 법령준수의 항변,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등의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소멸 시효내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한 제도이다.

### 4. 축산분야에서 이 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 보자.

#### (1) 제조물이란 무엇인가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으로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고 서비스를 제외하고, 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하고 “가공”인가 “미가공”인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 제조물에 덧붙여진 행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된다.

#### (2) 그러면 제조물의 해당 범위는

그러므로 미가공된 축산물(소, 돼지, 닭, 식육, 식용란, 원유 등)은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햄·소시지, 가공유 등 축산물가공품,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은 제조물에 해당된다.

참고로 축산물의 제조물 적용대상에 관한

제정경제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돈(生豚)·생우(生牛)를 도축하는 것과 지육 및 정육을 절단·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도축과정이나 포장과정에서 유통기간을 늘이거나 지육·정육의 선도를 높이기 위하여 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속성을 부과하거나 가치를 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가공·미가공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당해 제조물에 가해진 행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한 절단·냉장·냉동·건조는 미가공에 해당되며, 가열(삶는 것, 굽는 것, 볶는 것)·가미·조미·절입·훈제 등은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은 그 법적 성격이 사법이므로,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법원은 상기의 견해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3) 제조물의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제조물의 책임을 지는 자, 즉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축산물 가공업자,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사료 제조업자, 축산물·동물용의약품·사료 수입판매업자 등과 제조물의 성명·상호·상표·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PB 상품, OEM 상품제조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제조물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양축농가, 집유업자, 축산물

운반업자는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조업자 등은 유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을 진다.

### (5) 제조물의 결함은 무엇이 있는가요

제조물의 결함이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요 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사료 제조시 오염된 재료를 사용한 경우, 식중독균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된 경우, 용기, 포장이 불량한 경우 등이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

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형태가 질식성이 높은 성향을 가지는 경우, 위법첨가물 또는 기준을 초과하는 첨가물 사용 및 용기, 포장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축산물 오손(汚損), 용기의 파열, 파손, 오사용 및 용기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과 건조제 등 부속물 관련 설계 불비에 따른 사고 경우 등이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성분표, 첨가물, 제조년월일 등의 부실 및 허위표시와 취급, 오사용의 경고, 보존방법, 사용방법의 미기재 및 효능 및 기능 등의 허위, 과대표시 및 광고 등이다.

**(6) 피해발생 사례를 살펴보자**

결함 제조물에 의한 피해발생 사례를 보면 학교급식품이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오염되어 이를 먹은 여아가 사망한 경우, 오염된 저지방 우유와 이를 가공한 탈지분유를 먹은 약 1만4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조사한 결과 1주일에 최소한 한번은 밸브를 분해하여 청소

축산물의 제조물 적용대상에 관한 재정경제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돈(生豚)·생우(生牛)를 도축하는 것과 지육 및 정육을 절단·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도축과정이나 포장과정에서 유통기간을 늘이거나 지육·정육의 선도를 높이기 위하여 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속성을 부과하거나 가치를 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3주 동안 1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가 오염되어 발생한 경우, 유아용 분유에 안정제로 첨가한 제이인산 소다에 비소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약1만3천명중 사망자가 약130명에 달한 경우, 이유식에 시간, 기후, 기온 보관방법 등에 따라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았고, 나아가 찬 곳에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기온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표시하여 이를 먹은 유아가 식중독에 걸린 경우 등이다.

**(7)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는 무엇이 있는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구속적인 법령준수의 항변) 및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이다.

**(8) 제조업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제조업자가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 이상의 안전배려가 없는 경우 및 제조물을 공급한 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리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9)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은 언제까지**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은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나,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가산한다.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게는 몇일 길게는 5년 이내로 상기의 책임기간에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10) 양축농가와 제조업자 등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양축농가는 축산물이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및 광우병, 주사바늘, 가축의 출하시 항생제 등의 잔류 등에 노출 및 오염되지 않도록 질병 방역프로그램 및 휴약기간의 준수, 사양관리 개선 등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 원료의 생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체에서는 전체 사원이 참여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제품의 안전에 대한 HACCP, GMP 등의 법적기준을 능가하는 자가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이의 준수 및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설명서 제공 및 경고 부착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품질 및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결함 제품의 발생시 자발적인 리콜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제조물책임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담창구의 정비 및 제조물책임보험가입 등으로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양돈**

**본지 캠페인**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